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숙직근무중 창고 사무실에 갔다온다며 나간후 회사의 냉동창고문에 끼어 사망한 경우

(88-86호 88. 5. 16.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상남도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성명 : 대표이사 제○○

소속 : ○○농산(주)

원처분을 받은 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12. 17차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근로자 "구○○"(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농산(주) 품질과장으로서 1987. 9. 10 동료근로자 고○○와 함께 숙직근무자로서(숙직근무자의 정 위치는 창고 사무실이나 통상 생산과 사무실임) 24:00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는 기숙사에서 취침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재자는 1987. 9. 11 01:20경 창고 입고품의 검수작업을 마친후 동

료 근로자 이○○와 같이 기숙사까지 갔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창고 사무실에 갔다 온다며 나가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부터 냉동 창고의 열쇠를 받아 피재자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 냉동창고쪽으로 간후 동일 04:05분경 냉동실 당직 기사 김○○에 의하여 대형냉동실 자동문에 끼어 사망한채로 발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가 동일 01:20분 이후 기숙사에서 취침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경비원으로부터 냉동창고 열쇠를 받아 냉동창고에 가서 대형냉동실 자동문에 끼어 사체검안서상 "두개강내출혈"로 사망하였고 또한 부검소견에서 피재자는 알콜혈중농도 0.11%로 미루어 보아 근무중인데도 소재불상의 장소에서 음주한 것이 인정되는 등 사적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로서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무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농산(주) 대표이사 제○○)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3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1. 29 박○○)

4. 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 사본(1987. 11. 30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5. 사망진단서 사본(1987. 9. 17 의사 김○○)

6.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본(1987. 12 진주지방노동사무소 안○○)

7. 문답서 사본(김○○, 정○○, 고○○, 이○○)

8. 부검 감정서 사본(1987. 10. 18 의사 김○○)

9. 사고조회 회신(1987. 11. 21 진주경찰서장)

10.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농산(주) 품질과장으로서 1987. 9. 10 동료근로자 고○○와 함께 숙직 근무자로 24:00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는 기숙사에서 취침토록 되어 있으나 피재자는 1987. 9. 11 01:20경 창고 입고품의 검수작업을 마친후 동료 근로자 이○○와 같이 기숙사까지 갔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창고 사무실에 갔다 온다며 나가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부터 냉동창고의 열쇠를 받아 피재자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 냉동창고쪽으로 간 후 1987. 9. 11 04:05경 냉동실 당직기사 김○○가 발견한 바 대형냉동실 자동문에 끼어 사망하였으며, 사체 검안서상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하였고 또한 부검소견에서 피재자는 혈중알콜농도 0.11%로 미루어 보아 근무중에 소재불상의 장소에서 음주한 것 등으로 원처분청은 사적

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데 대하여 이건을 면밀히 살피건대.

첫째 : 피재자는 1987. 9. 10 숙직근무자로서 1987. 9. 11 01:12분까지는 소정의 숙직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행적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경비원으로부터 냉동창고 열쇠를 임의 인수 받아 냉동창고 쪽으로 간 후 동일 04:05경 냉동실 당직기사 김○○가 발견한 바 대형냉동실 자동문에 끼어 사망하였으며, 사체검안서상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하였고

둘째 : 피재자의 냉동창고에 가서 대형냉동실 자동문을 열었다는 것은 회사사용자 또는 상사의 지시에 의하였다는 거증도 없거니와 냉동실 기사 김○○에게도 하등의 사전 협의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검소견상 혈중 알콜농도 0.11%가 나타난 점으로 보아 1987. 9. 11 01:20 이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음주한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실황으로 보아 피재자는 숙직근무자이나 숙직규정을 위배하고 임의 근무지(숙직 정 위치)를 이탈하였고 또한 사업주 또는 상사의 지시와 냉동실 당직자의 사전 협의없이 임의 냉동창고(냉동실 등)의 문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하였고 부검소견상 혈중알콜농도 0.11%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종합 판단할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취소할 이유가 없다.

○○화학(주)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다 휴식중에 갑자기 쓰러져 피를 토하고 의식불명이 되어 사망한 경우

(88-80호 88. 6. 20.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성명 : 이 ○ ○

원처분을 받은 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원 처 분 청 :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이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11. 1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화학공업사 소속근로자로서 1987. 7. 29 18:00경 작업중 갑자기 피를 토한 후 쓰러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사체 검안서상 "직접사인:질식에 의한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각혈, 의식소실, 선행사인:미상"이며 과거 위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각혈, 의식소실의 원인은 추정하기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이며(한강성심병원)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위 절제술을 받은 병력 이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일체의 최근 병력 및 확실한 선행사인 미상으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또한 신경정찰서에 사건조사 회신을 보면 각혈로 인하여 질식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는 원인불명의 기존증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로 업무외적 사유로 인한 재해로 판단하여 업무의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삼복중 작업이 서열한대도 선풍기도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피를 토하고 사망한 재해인바 이는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3 이 ○○)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3. 21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1988. 2. 2 박○○)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정서(1987. 11. 11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5. 사망진단서(1987. 7. 29 한강성심병원 의사 박○○)
6. 자문의 소견서(1987. 자문의 김 ○○)
7.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통보(1987. 9. 5 신경정찰서장)
8. 소견서(1987. 8. 26 한강성심병원장)
9. 문답서(1987. 8. 18 김○○, 이○○)
10.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1988. 5. 6 한림대학의료원 의과학 센터)
11. 이○○ 근로시간 현황(1987. 4. 1~7. 28)
12.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화학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1987. 7. 29 18:00경 작업중 갑자기 피를 토한 후 쓰러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 응급처치 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 심사위원회에서는 피재자의 상병명과 업무 기인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피재자는 1987. 7. 29. 18:00경 작업중 갑자기 피를 토한 후 쓰러져 한강성심병원으로 응급처치 하였으나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 수행 중의 재해이다.

둘째:피재자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질식에 의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각혈, 의식소실, 선행사인:미상”이며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과거 위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각혈, 의식소실의 원인은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셋째: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위 절제술을 받은 병력 이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일체의 최근 병력 및 확실한 선행사인 미상으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신정경찰서의 사건 조사회신을 보면 각혈로 인하여 질식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는 것임.

네째:피재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4~7월간) 1일 평균 근로시간 10.42~10.58시간(점심시간 1시간 별도)임. 연장근무시간 62~67시간이나 이상의 총시간 중에 2인 1조로 2명은 작업을 하고 1명은 30분간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월간 휴일 4~5일임.

다섯째: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분진, 소음, 조명, 고열등의 작업환경은 비교적 불량한 편

이며 특히 피재자가 근무하던 곳의 탄산칼슘의 분진이 발생되고 있으나 측정성적은 허용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열작업에 있어서 신체상의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근로시간 1시간 근무 30분 휴식제도를 취하고 있음.

위와 같이 피재자의 사인에 있어서 주치의의 소견상 과거 위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을 뿐 각혈, 의식 소실의 원인은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자문의 소견에도 주치의와 같은 소견이며 특히 “선행사인 미상”으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고 또한 작업환경 불량으로 인하여 피재자의 질병이 유발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며 이를 인정할만한 거증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국제학회 안내

- 직업관련성 골격근 장애예방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Prevention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PREMUS)
 - 일 시 : 1992. 5. 12 - 14
 - 장 소 : Stockholm, 스웨덴
- 제6차 수지진동에 관한 국제회의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d-Arm Vibration
 - 일 시 : 1992. 5. 19 - 22
 - 장 소 : Bonn, 독일
- 제8차 직업성폐질환에 관한 국제회의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cupational Lung Disease
 - 일 시 : 1992. 9. 14 - 17
 - 장 소 : prague, 체코슬라바키아
- 20차 의화학회의
20th Medicchem Congress
 - 일 시 : 1992. 10. 6 - 9
 - 장 소 : London, 영국